

의 안 번 호	제871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종갑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**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(이종갑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 : 이종갑, 김꽃임, 이옥규, 박경숙,
유재목, 이의영, 임병운

1. 개정이유

- 충북 국제개발협력(ODA)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KOICA ODA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국제교류와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조례명 변경(제명안)
- 국제교류협력을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(안 제1조, 제2조)
-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와 대상지역 신설(안 제10조)
-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신설(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 계 법 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5. 3.
- 협 의 :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
- 비 용 추 계 : 비용추계 제외 사유서 첨부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와 외국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”를 “충청북도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증진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”을 “국제교류협력 증진”으로 한다.

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중전의 제4조)제1항 중 “충청북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

다)”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도지사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국제개발협력사업) ①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도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
2. 해외 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 출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</u>	<u>충청북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와 외국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제2조(적용범위) <u>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</u>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u><신 설></u> 제3조 (생 략) 제4조(자매결연의 제의) ① <u>충청북도가</u>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	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--.</u> 제2조(적용범위) <u>국제교류협력 증진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</u> 제4조 (현행 제3조와 같음) 제5조(자매결연의 제의) ①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</u>----- -----

해당지역의 각종 자료를 받아
지역여건, 행정규모, 외교적 특
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
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
다.

②·③ (생략)

제5조 (생략)

제6조(자매결연의 체결) ① 충청
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
다)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
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
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“라 한
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7조·제8조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제7조(자매결연의 체결) ① 도지
사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
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
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“라 한
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·제9조 (현행 제7조 및 제8
조와 같음)

제10조(국제개발협력사업) ① 도
지사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
지증진을 위하여 「국제개발협
력기본법」에 따른 국제개발협
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
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도
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
2. 해외 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

<신 설>

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
고 인정되는 지역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
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
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
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 출자·
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에 위탁
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
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
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
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
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
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
민간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제개발협력기본법

제4조(기본원칙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시행기관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
2.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
3.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
4.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
5.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

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,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가등의 책무)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.

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.

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

제4조(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)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·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

호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14.>

제5조(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) ①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. <개정 2011. 7. 14., 2013. 8. 13.>

1.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
2.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·장비의 지원
3. 현금지원
4. 보건의료활동
5. 수송지원
6. 임시 재해복구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·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8. 13.>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,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.

○ 작성자

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장 박유정